

서울특별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제 안 설 명

□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!

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
더불어민주당 강서구 제1선거구 출신 박상구 의원입니다.

본 위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.

□ 현행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의 날은

‘1명의 기증으로 최대 9명을 구(9)할 수 있다는 의미’로
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기념일로 지정하고 있으나,

기증자 자체가 아니라 기증된 장기의 수에 주목하여
기념일을 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관계 단체
(대한이식학회·한국장기기증원)의 의견이 있고,

기증의 종류에는 장기뿐만 아니라 인체조직도 포함될 수 있으며,

상위법인 「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」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
‘생명나눔주간’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으므로

서울특별시 조례에서도 장기기증의 날이 아닌
생명나눔 주간을 운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.
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,
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‘원안 가결’하여 주실 것을
부탁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